

審 査 報 告 書

2006. 12. 19.

행 정 위 원 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1월 16일. 영등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6년 11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2006.12. 6)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정진)

가. 제정이유

○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의 입법 활동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공포 등 단위 업무별로 구분·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일련의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입법예고 대상 및 방법, 예고기간 등을 규정(안 제5조 내지 제11조)

○ 자치법규의 공포방법 및 공포일과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2조 내지 제15조)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의 수 범위를 1/50 이상으로 정함(안 제17조)

3. 專 門 委 員 的 檢 討 報 告 要 旨 (專 門 委 員 김완섭)

○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합쳐 입법에 관한 일련의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 2006년 1월 11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 규정에서 조례의 제정 및 폐폐를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서 주민 수를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 2005년 12월 31일 현재 영등포구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는 323,467명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5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서 주민 수는 6,470명, 2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서 주민 수는 16,174명이며, (개정 전의 지방자치법에 의한 연서 주민 수는 7,800명임)

○ 이 조례는 주민의 입법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제정 조례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음.

4. 審査結果：原案 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
----------	----

제출년월일 : 2006. 11.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의 입법 활동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공포 등 단위 업무별로 구분· 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일련의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법예고 대상 및 방법, 예고기간 규정 등을 규정 (안 제5조 내지 제11조)
- 자치법규의 공포방법 및 공포일과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2조 내지 제15조)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의 수 범위를 1/50 이상으로 정함 (안 제17조)

※ 2005. 12. 31. 기준 19세 이상 주민 총수 : 323,467명

- 종전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연서 주민의 수를 직접 규정
 - 우리구 7,800명(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42 수준)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연서 주민의 수 : 1/50 경우 6,470명, 1/40 경우 8,087명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의사항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2006.10.18. ~ 11.08.(20일간)]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구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구민·법인·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구의 자치법규의 종류와 제정·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입 법 예 고

제5조(입법예고 대상)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 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3.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6조(예고문 작성) ①입법예고문(별지 제1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방법) ①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시보·신문·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①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제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제12조(전문) ①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조례의 전문에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③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제13조(공포번호) ①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4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15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16조(시행일) 자치법규는 당해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4장 자치법규의 정비

제17조(자치법규 정비) ①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5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18조(연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서 주민의 수에서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입법진행 중에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입법예고를 하여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안 작성예시 : 제6조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조례(규칙)를 제정(또는 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제정(또는 개정, 폐지)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제정의 경우는 위와 같이 하고 전문(전부)개정, 부분(일부)개정, 폐지의 경우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전문개정의 경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일부제정의 경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폐 지의 경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2. 주요내용 (다음과 같이 작성)

- 가.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 나. (기대효과 또는 개정취지)를 위하여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 다.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 라.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다. (제도의 도입의 배경)하므로, (기대효과)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전화 : ○○○○- ○○○○~○, FAX : ○○○○ - ○○○○)

4.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작성)

가. 개최일시 :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

다. 공청사항

(1)

(2)

(3)

라. 발언자 수 : 인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월○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의견)

(2) 의견 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격으로 발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체·법인명 및 소속 직위를 기재) 및 연락전화번호